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종양 · 김은혜 · 이달희
박정훈 · 박준태 · 김성원
김태호 · 이성권 · 박형수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,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

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·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의2 신설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노후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)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·용적률·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4조의2(노후 관광지등의 조성</u> <u>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) 이 법</u> <u>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30년이</u> <u>경과한 관광지등에 대하여 제5</u> <u>4조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</u> <u>려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</u> <u>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</u> <u>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</u> <u>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</u>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</u> <u>· 용적률 · 도로율 등 시설 설</u> <u>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</u> <u>있다.</u>